

## 8

#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판례집 17-1, 668, 683)

# Case

고등학생인 정관심은 인터넷 뉴스사이트에서 기사를 읽다가 댓글을 쓰고 싶었다. 그런데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이 필요하였다. 댓글은 실명으로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관심은 귀찮기도 하고 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댓글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댓글 쓰기를 포기했다.

학교에서나 방송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늘 교육하면서, 매번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개인정보와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나 건강상태, 정치적·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나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를 통하여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그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한 정보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리고 또한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가 바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또한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관리·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 비롯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권리로 처음 인정한다.

### 주민등록증

누구나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가면 손가락 지문 10개를 모두 찍으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에는 오른손 엄지 지문이 찍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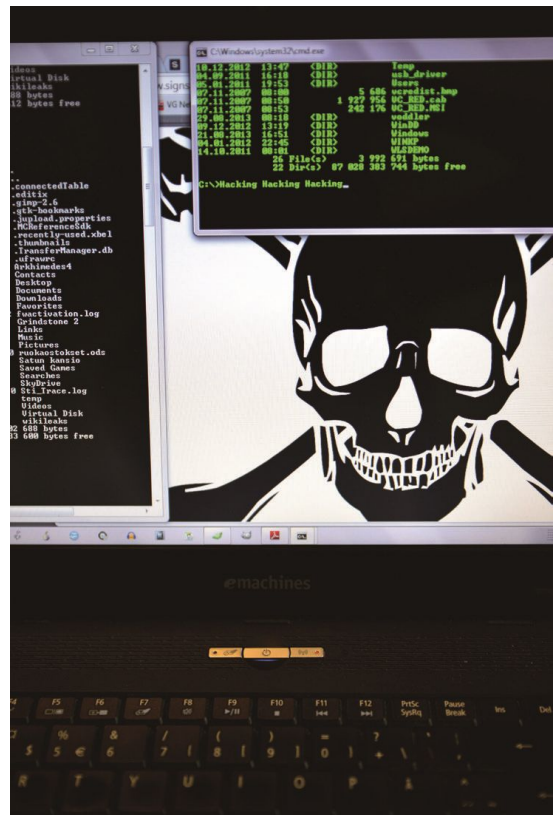
### 주민등록법 합헌 결정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손가락 지문은 개인정보이고 국민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 인터넷 실명제의 내용과 취지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 운영자들이 댓글을 쓰거나 읽고 싶어 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인데, 이 법률은 하루 평균 이용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 운영자들에게 이용자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본인확인 의무는 인터넷이 가지는 높은 전파성을 이용하여 익명을 빙자한 무차별한 인신공격과 왜곡된 의사표현이 인터넷 공간에 무제한 떠도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무조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 자체를 주저하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 최근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현황

- 2010년 3월 신세계물, 820만 명 개인정보 유출
- 2011년 4월 8일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 175만 명 개인정보 유출
- 2011년 7월 26일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및 싸이월드, 3,5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 2011년 11월 넥슨 1,320만 명 개인정보 유출
- 2012년 5월 EBS 4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 2012년 7월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 인터넷 실명제의 위험적 요소

익명을 이용한 무분별한 인터넷의 악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취지는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우선, 불법정보를 게시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를 찾는 것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이나 확인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로 인해 개인의 명예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조치로써 구제가 가능하며 또한 사후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등의 방법도 있다.

나아가 인터넷 실명제로 개인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의 관리에도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

### 생각해 볼 문제

인터넷 실명제로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은 무엇이 있을까?